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05
------------	-----

2015년 12월 4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5. 10. 30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5. 11. 4 회부)

2. 제안이유

도시디자인 사업에 주민 참여를 높이고, 도시디자인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디자인 품격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의 용어를 재정의하며, 도시디자인사업·도시디자인심의 등의 용어를 신설함(안 제 1조, 제2조)
- 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 라. 시장이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등이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경관조례 개정(2014. 5.14)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

의대상과 위원회 수를 정비함(안 제12조, 제16조)

바. 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와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사.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디자인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민간전문가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제2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나.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관련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②항 및 ⑦항에 따라 주민 제안에 의해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제안자와 사업 시행자를 분리하지 않고 있어 특정인(제안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까지 맡기는 특혜 발생 우려 있음 → 주민 제안 중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중 예산 비중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제안자와 분리할 필요 있음. (예 : 예산 비중이 사업비의 50% 이상시 사업시행자는 구청장 등) → 또한, 예산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④항에 의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치게 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p>[일부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직접 제안하여 시행한 결과에 대한 자부심 등 필요한 경우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는 바, 조례개정 전부터 부패를 염려하는 것 보다 향후 운영하면서 위원회에서 모든 디자인사업을 자문, 사업비 지원 대상만 자문 또는 일정금액 이상 대상만 자문할 것인지 결정하면 될 것임.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또는 구청장이 제안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15.1.15 ~ 2.4) 결과 : 별첨

5. 검토의견

□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디자인의 개념 재정립과 도시디자인위원회 정비 및 심의대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및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에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민간전문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것임.
-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총 15개 조문을 총 6장 26개 조문으로 개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제3조) 및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안 제5조 및 제7조), 도시디자인사업 시행 및 주민 제안 근거 마련(안 제9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횟수 제한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안 제14조),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6조), 민간전문가 운영(안 제25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

제1장 총칙

- 조례 목적 변경(도시경관 → 도시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용어 재정의
- 조례상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 신설

제2장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등

- 도시디자인이 지켜야 할 원칙 신설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 신설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시 의견수렴 의무화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 시행 근거 마련
-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절차, 주민참여 및 지원방법 등 신설

제4장 사회기반시설 등의 심의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심의신청 시기·심의절차 규정 신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제도 도입하여 공정성 확보

제5장 도시디자인위원회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3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통합 및 위원 수 감원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원 구성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

제6장 민간전문가 운영

- 시장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설치 근거 마련

□ 검토사항

① 조례 목적과 용어정의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목적을 “도시경관”의 개선·관리에서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로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사업”, “도시디자인 심의”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용어정의를 정비하였음.

②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5조),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내용과 원칙(안 제6조)

- 도시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기본원칙 중 제4호 “우수한 도시공간 등의 보전·개선과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물 등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나,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내용으로 “도시디자인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경관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원칙 등을 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의 타 계획과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중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우수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물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할 필요가 있으며1),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 제9조제1항에서 “시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근거 규정이 될 것이라 판단됨.

③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8조)

-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광고물·야간경관 등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대상 중 옥외광고물의 경우 관련 법규²⁾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한 수립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2015년 2월)을 수립하여 옥외광고물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은 관련 조례³⁾에서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 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⁴⁾.

1)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도시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건축물·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배치·형태·윤곽·색채·조명 등을 디자인하는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이 도시디자인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1조

- 따라서, 옥외광고물과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시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이를 정하는 것은 법령 위계나 개별법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과 타 법규에서 정한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④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안 제12조)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로 「경관조례」 별표의 경관심의 대상(야간경관시설 제외)과 이 조례 별표의 시설물(자치구 시행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제외)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심의대상 시설물은 「경관법」이나 「서울특별시 경관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도시디자인 향상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면, 이 개정조례안 별표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시설물의 “제설시설”과 전원설비의 “송전탑과 변압탑”, 자전거이용시설의 “자전거 보관대 등”은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으로 이미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⁵⁾을 디자인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이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상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5)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개정조례안에서의 심의대상은 건축물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로 이해되나, 부속시설에 대한 디자인도 이 개정조례안에서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안)	비고 (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제설시설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도시철도시설	
하천	하천법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발전·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야간경관시설	빛공해방지및 도시조명방지요령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 도로법상 도로: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⑤ 도시디자인 위원회 관련 심의 신청시기 및 절차(안 제13조 및 제14조)

- 심의신청 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신청,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한 실시설계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
- 심의처리 기한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개최
- 심의횟수 제한 : 2회 초과 재심의 금지
- 심의결과 이의신청 : 결과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신청

- 심의대상 사업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신청 시기 지정,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심의 횟수 제한, 심의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안 제15조 및 제16조, 제20조)

○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 수 축소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3개 실무위원회(위원수 90명)를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통합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
- 성비 : 특정 성이 10분의 6 이상 되지 않도록 함

○ 회의

- 위원장이 지정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및 3개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통합하고 심의대상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며, 위원의 수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음.
-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이 10분의 6 이상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6)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7)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이 반영·요청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긴 하나, 성별 특정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있어, 매 회의 개최시마다 7명 이

6)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2013.8.13.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2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제1항

-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명 또는 6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⑦ 민간전문가 위촉,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운영(안 제25조 및 제26조)

- 민간전문가 제도는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2013.5.30. 제정·시행)⁸⁾에 따라 금년의 조직개편 이전에 디자인본부(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과)에서 민간전문가 MP⁹⁾와 MP를 지원하는 민간 디자인자문단¹⁰⁾을 구성하였음.
- 조직개편 이후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MP와 디자인자문단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제도화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안 제25조는 자문단의 성격이며, 안 제26조의 내용은 민간 MP의 역할을 정하고 있어, 민간전문가의 성격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 민간전문가 위촉

- 시장은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되, 성별 고려

○ 민간전문가의 역할

1. 도시디자인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기관)간 업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자문
3.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자문 총괄
4. 도시디자인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및 지원

○ 민간전문가의 운영

- 임기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시장이 따로 정함

8) 이 규칙은 2013년 9월과 2014년 2월 “공공디자인 민간 MP제도 도입 추진”과 “공공디자인 MP 지원인력 배정 방안을 추진”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 제정·시행된 것임.

9) 「공공디자인 감독 운영(안)」(시장 방침, 2014.3.22.)에 따라 2014.4.1.일 공공디자인 감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016.3.31.일 까지임

10)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시장방침, 2014.6.)에 따라 7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였음.

-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총괄)”, “관련부서(기관)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자문”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총괄계획가의 역할¹¹⁾과 유사하여, 이 개정조례안과 「건축기본조례」에서 의미하는 도시디자인의 개념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MP의 역할 중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한 자문”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상충 또는 중복 규정이라 할 것임.
- 특히, 현재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이 서울의 도시환경수준 향상과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1) 서울총괄건축가의 역할 :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제시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민간전문가의 역할 (도시디자인조례 제26조제1항)	서울총괄계획가의 역할 (건축기본조례 제36조제1항)
1. 도시디자인 분야의 <u>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u> 2.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기관)간 업무 협조 및 조정 <u>에 관한 자문</u> 3.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u>자문 총괄</u> 4. 도시디자인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및 지원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공공디자인 감독의 역할 및 지원조직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9조)	
※ 감독의 역할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 나.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기타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3.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 감독업무의 지원 - 총괄부서에서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행정적 지원 -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음

□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도시 디자인을-----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p> <p>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09.4.22></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공간·도시환경(이하 "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건축물·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형태·윤곽·색채·조명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p> <p>(삭 제)</p> <p>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란 시 전체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3. "도시디자인사업"이란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4. "도시디자인사업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사업제안서 승인을 얻어 도</p>

<p>3. “<u>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u>”이란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개정 2009.4.22></p> <p>(신 설)</p>	<p>시디자인사업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5. “<u>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u>”이란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광고물·야간경관 등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p> <p>6. “<u>도시디자인심의</u>”란 디자인 관련한 정책·조례 등과 시설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p>
<p>(신 설)</p>	<p>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간 등의 보전·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등</p>
<p>(신 설)</p>	<p>제5조(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 도시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은 주변환경 등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우수한 도시공간 등의 보전·개선과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물 등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한다.
<p>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p>	<p>제6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시장은</p>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4.22>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시책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 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22, 2011.9.29>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

② -----

1. (현행과 같음)
2. -----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도시디자인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
망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다른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제15조에 따라 도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 제4항에 -----

-----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p>다.<2009.4.22.></p>	<p>지에 공고(게재)-----.</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9.4.22.></p>	<p>제8조(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은 도시디자인을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②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이드라인의 비전 2.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3.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및 활용 방안 4. 그 밖에 도시디자인 향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민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5.></p>	<p>③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p>

	제3장 도시디자인사업 등
(신 설)	<p>제9조(도시디자인사업)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p>
(신 설)	<p>② 구청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p>
(신 설)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시디자인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p>
(신 설)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신 설)	<p>⑤ 도시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디자인사업 개요 2. 도시디자인사업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회기반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4.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디자인사업 개략적인 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6. 그 밖에 도시디자인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신 설)	<p>⑥ 도시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도시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신 설)	<p>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도</p>

<p>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9.4.22.></p> <p>② 시장,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2009.4.22></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p>	<p><u>시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p>	<p>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장 사회기반시설 등의 심의</p>
<p>(신 설)</p>	<p>제12조(도시디자인 심의대상)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조례」 별표의 심의대상. 다만 야간경관시설은 제외한다. 2. 별표의 시설물. 다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은 제외한다.

<p><u>(신 설)</u></p>	<p><u>제13조(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u> 제12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14조(도시디자인 심의절차)</u>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디자인위원회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장 도시디자인위원회</p>
<p><u>제7조(위원회의 설치)</u>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4.22, 2011.9.29></p> <p>1. 디자인서울의 이념·비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p> <p>2. 디자인서울의 중요정책 방향제시 및</p>	<p><u>제15조(위원회의 설치)</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p> <p>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p>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 3. 디자인서울에 대한 소통전략에 관한 사항
-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6. 디자인서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9.4.22>

- 1.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9.4.22>
<개정 2010.7.15, 2011.9.29>
- 2. 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9.4.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관한 사항

- 3.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의 심의대상에 관한 심의. 다만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은 제외
- 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 6. 제9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사항
-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p>2011.9.29></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u>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u><신설 2010.7.15, 2011.9.29></p> <p>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4.22></p>	<p>③ ----- <u>관계공무원과</u> ----- ----- ----- ----- ----- <u>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 이상</u> <u>이 되지 않도록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제1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 ----- <u>어느 하나에</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신설 2009.7.30>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p>	<p>제18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p>

<p>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p> <p>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4.22, 2011.9.29></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9.29></p> <p>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u>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u><2009.4.22, 2010.7.15, 2011.7.28, 2012.3.15></p>	<p>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 <u>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u></p>
<p>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4.22></p> <p>② <u>회의의 위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개정 2009.4.22., 2011.9.29></p>	<p>제2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u> ----- -----.</p>
<p>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 <u>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제1실무위원회

가.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물(공공건축물 분야 제외)

나.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2. 제2실무위원회 : 별표 1 중 제3호 공공건축물 분야

3. 제3실무위원회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삭 제)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p>⑦ <u>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u></p> <p>⑧ <u>실무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u> [전문개정 2011.9.29]</p>	<p>(삭 제)</p> <p>(삭 제)</p>
<p>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2></p>	<p>제21조(회의록 등의 비치) (현행과 같음)</p>
<p>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p>	<p>제22조(협조요청)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p>	<p>제23조(수당) (현행과 같음)</p>
<p>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4.22, 2010.7.15, 2011.9.29></p>	<p>제24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p>
	<p>제6장 민간전문가 운영</p>
<p>(신 설)</p>	<p>제25조(민간전문가 위촉)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 및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p>

	<p>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신 설)</p>	<p><u>제26조(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운영)</u>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디자인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기관)간 업무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자문 3.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자문 총괄 4. 도시디자인분야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에서 강의 및 지원 <p>② 기타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의 운영에 관하여 임기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u> 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u>제25조제1항제3호</u> 중 “제7조에 따른 서울 시민디자인위원회”를 “제15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한다.</p>